

# 손에 잡히는 성(性)

부모도 모르는 자녀의 성

조은경 / 강석영 / 이대형 / 유춘자 / 김경민 / 전소연



한국청소년상담원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손에 잡히는 성 (부모도 모르는 자녀의 성) 학부모개입 지침서 8

인 쇄 : 2011년 12월

발 행 : 2011년 12월

발 행 인 : 구 본 용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132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생용사촌인쇄정보(주)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 발간사

근래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 면면이 다양해지고 심각성 또한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기위해 방문하고 있는데, 최근의 상담 경향들을 살펴보면,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가족 문제, 성 문제와 같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화되어가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지식들에 대한 공유가 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상담원에서는 그동안 7종의 학부모개입지침서와 6종의 청소년 자기성장 지침서를 발간하고, 인터넷게임중독프로그램, 자살예방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솔리언또래상담프로그램 등의 전문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의 더해가는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2011년에는 ‘손에 잡히는 성(부모도 모르는 자녀의 성)’, ‘SOS 우리 아이 인터넷중독 도와주세요’, ‘법으로 들여다보는 학교폭력’, ‘우울청소년을 위한 First Aid’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침서에는 문제 영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대응 방법,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사항들, 다양한 관련 정보들, 기관들에 대한 소개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정과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챙기시고 지도하는데 도움 받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 지침서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문제영역별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이 지침서를 제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쏟아주신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직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침서가 차가운 토지에 꽃을 피우듯이 청소년들의 어려움으로 힘에 겨운 학부모님들과 청소년 지도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고민에 동참하고 발전하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12월에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구 본 용

## 들어가는 말

요즘 성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들 대부분 자녀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막막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여러 문제 중 특히 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자녀들의 성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와 성관련 주제로 부모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교육은 내용을 전달하는 부모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이 성에 대해 편안한 마음인지, 자녀의 성문제를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 자신의 성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성교육시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면 자녀는 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 지침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자녀 성문제에 대해 보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자녀 성문제를 Q&A로 다루고 사례별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이 지침서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을 위해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직무연수TF팀장 조은경

# Contents



제1장 청소년의 성(性) .....	1
1. 알고싶어요. 성!! .....	2
2. 청소년 성 실태 .....	4
제2장 부모가 인식하는 성 .....	11
1. 성의식 자가진단(학부모용) .....	12
2. 성talk .....	14
제3장 청소년 성관련 Q&A .....	17
1. 이성교제 .....	18
2. 피임 .....	20
3. 임신 .....	22
4. 자위 .....	24
5. 음란물 .....	26
6. 동성애 .....	30
7. 이상성행동 .....	33
8. 성매매 .....	39
부록 .....	43
1. 성관련 추천 영화 .....	44
2. 성폭력 .....	45
3. 성관련 법률 .....	56
4. 성관련 연계기관 .....	64



# 제1장

## 청소년의 성(性)

저이 알고 싶네,  
 궁금한 건데  
 성이란 건가, 어떤걸로 이  
 것이지? 라는, 굉장히  
 흔한 질문이, 이젠 학교  
 에서부터, 심지어  
 가정에서도 자주  
 들린다. ← 즉 청소년=이제  
 성에 대한 개념 따지는 이젠  
 당연한 이야기  
 였던 것 같아.

그리고 성은 굉장히  
 복잡한 주제이다.

'이성'에 관하여  
 이 책은 '동성·중성'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성'이란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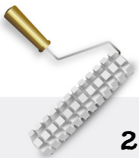


## 제1장 청소년의 성(性)

### 1. 알고싶어요. 성(性)!!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어떤 궁금증들이 있을까요?

- 실제로 하는 것과 야동을 보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 남자들은 대부분 야동을 보면 흥분을 하게 되고 발기가 되는데 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 여자가 자주 sex를 하면 몸에는 어떠한 변화가 오나요?
- 임신을 하게되면 요즘엔 왜 낙태가 안되요?
- 남자애들은 왜 야동을 봐요?
- 장애인 남자랑 장애인 여자가 애기를 낳으면 장애인이 나타나요?
- 남자가 몽정을 시작했다는 건 야한 생각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뜻 인가요?
- 임신을 한 도중에 아이를 낙태시킬 수 없나요?
- 초등학생부터 지금까지 성교육의 기본적인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교육은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듯이 하는 것 같아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성은 평등하다 했는데 사실상 보면 다 죄다. '이성'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말은 '동성+중성'은 한 구석에 몰아 놓고 '이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싫습니다. 정말 '평등'하게 교육을 '활발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 정확한 피임방법





- 실수로 애기를 임신 했을 때의 대처 방법
- sex 자세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포즈인가요
- 섹스를 하기 전에 윤활유를 바른다고 하는데 윤활유가 뭔가요?
- 엄마 됐을 때 내 아이에게 어떤 성교육을 해주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 왜 임신을 하고서 낙태를 못하게 하나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생긴 아이라서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낳기 전에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몸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 남자가 꼭 리드해야 돼요?
- 야동을 보면 섹스를 하는데 섹스는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동성애.. 남자는 징그럽고 아무 감정 없는데 여자친구들과의 접촉 혹은 설레임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사람들은 왜 동성애를 더럽다고 하나요?
- 남친이 텅킴. 너무 심함. 내가 싫어서 그런가? 200일 다 되어 가는데 손도 못 잡아 봄ㄷ 앤 뭘까요?
-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가요? 진도 나가는 것이 사랑인가요?
- 정부는 10대 임신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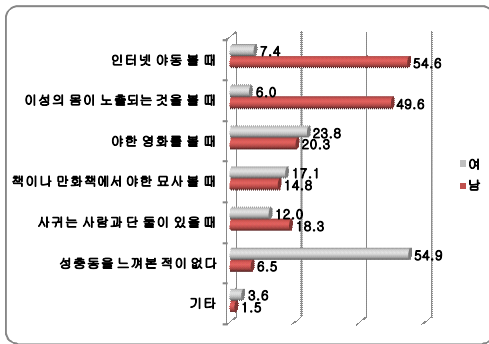
## 2. 청소년 성 실태

청소년성문제 전문기관인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십대 청소년들의 성경험 및 성 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경험과 태도 경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곳에 사용된 설문조사는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2010년 고등학생 총 1,2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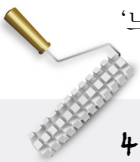
### 성충동 느끼는 때(복수응답)

성충동이 느껴지는 때를 복수응답하도록 물어 봤을 때 남학생의 경우 ‘야동 볼 때’(54.6%), ‘이성의 몸이 노출되는 것을 볼 때’(49.6%)가 가장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는 ‘성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다’(54.9%)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야한 영화를 볼 때’(23.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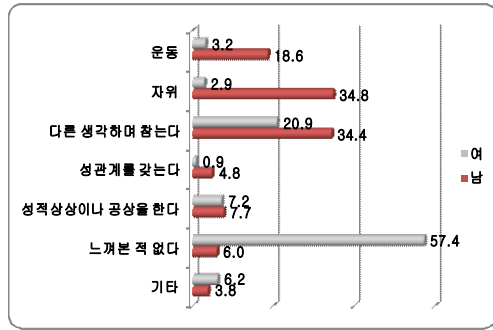


### 성충동 해결방법(복수응답)

성충동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학생의 경우 ‘느껴본 적 없다’(57.4%)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른 생각하며 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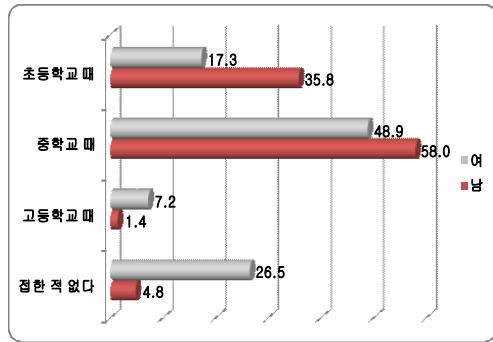


다'(20.9%)가 뒤를 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자위'(34.8%), '다른 생각하며 참는다'(34.4%)가 가장 높았고 '운동'(18.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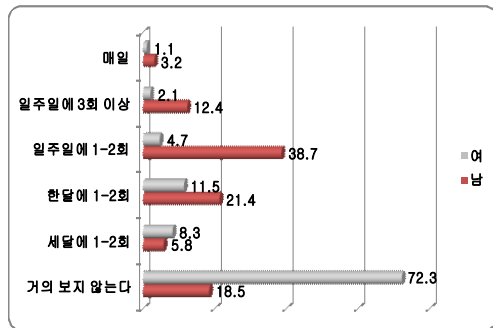
### 음란매체 처음 접한 시기

음란매체를 처음 접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남학생(58.0%), 여학생(48.9%)가 '중학교'시기에 접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35.8%)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음란매체 이용빈도

음란매체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에 대해 여학생은 '거의 보지 않는다'(72.3%)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남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1-2회'(38.7%), '한달에 1-2회'(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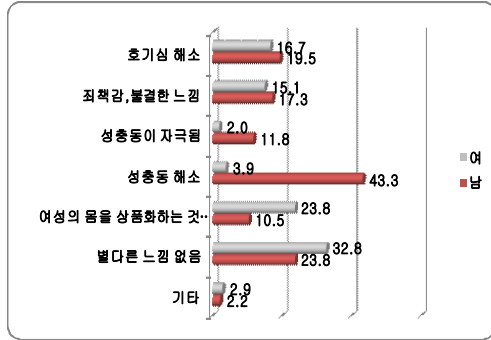




회'(21.4%)가 가장 높은 응답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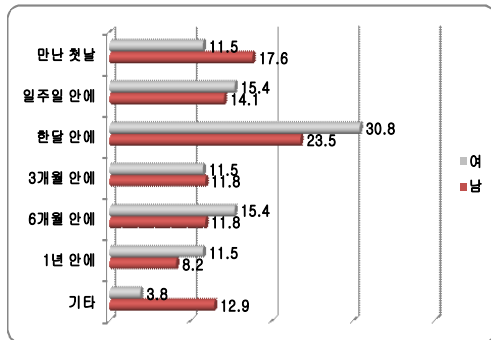
### 음란물을 보고 난 후 느낌(복수응답)

음란물을 보고 난 후 느낌에 대한 질문에는 '성충동이 해소 되었다'가 43.3%로 가장 높았고, '별다른 느낌 없음'(23.8%), '호기심 해소'(19.5%), '죄책감, 불결한 느낌'(17.3%)이 다음으로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는 '별다른 느낌 없음'(32.8%)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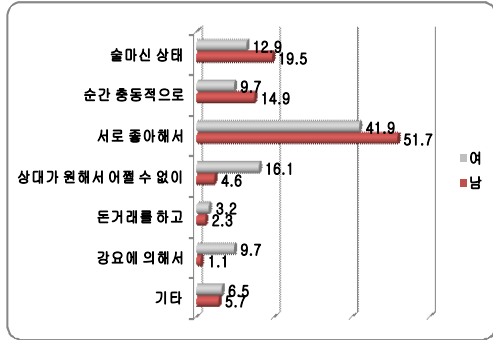
### 이성친구와 첫 성관계 시기

이성친구와의 첫 성관계 시기를 묻는 질문에 남(23.5%), 여(30.8%) 학생 모두 '한 달 안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학생이 '만난 첫날'(17.6%), '일주일 안에'(14.1%)가 높았다. 여학생은 '일주일 안에'(15.4%), '6개월 안에'(15.4%)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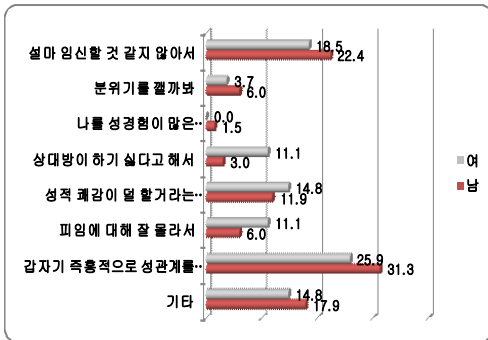
### 첫 성관계 동기

첫 성관계를 갖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서로 좋아해서'가 남학생(51.7%), 여학생(41.9%)가 모두 높게 응답했다. 다음으로 '술마신 상태'(19.5), '순간 충동적으로'(14.9)가 높았으며, 여학생은 '상대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16.1%), '술마신 상태'(12.9%)가 높게 나타났다.



### 피임을 하지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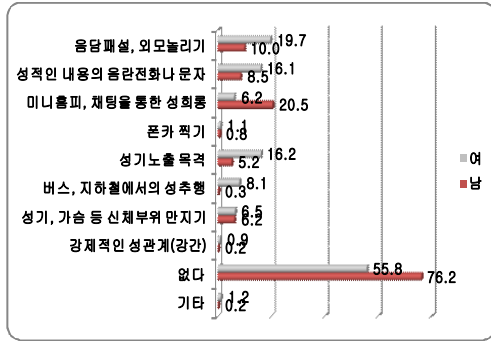
피임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31.3%), 여학생(25.9%) 모두 '갑자기 즉흥적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어서'가 높에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설마 임신할 것 같지 않아서', '성적 쾌감이 덜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의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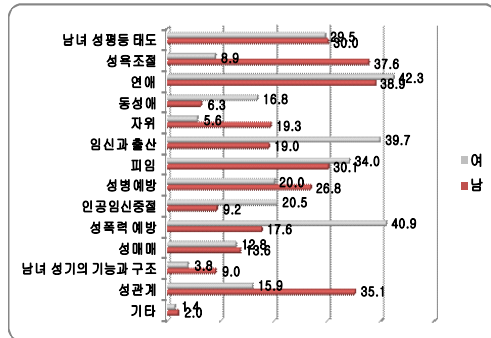
### 성적 피해 경험 유무(복수응답)

성적인 피해를 당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없다’에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55.8%, 남학생이 76.2%로 나타났다. 피해가 있는 경우(복수 응답)는 여학생이 ‘음담패설, 외모놀리기’(19.7%), ‘성기노출 목적’(16.2%), ‘성적인 내용의 음란전화나 문자’(1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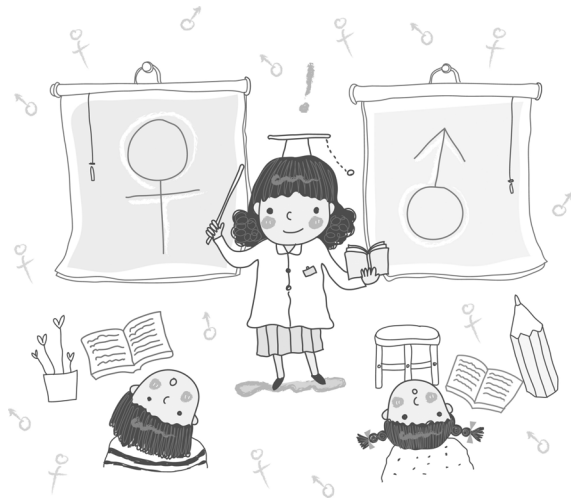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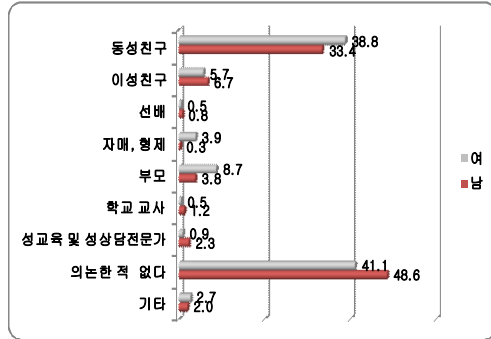
### 원하는 성교육 내용(복수응답)

원하는 성교육 내용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남(38.9%), 여(42.3%) 학생 공통적으로 ‘연애’에 대한 것을 비교적 높게 응답했다. 여학생의 경우 ‘성폭력 예방’(40.9%), ‘임신과 출산’(39.7%), ‘피임’(34.0%)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했다. 남학생의 경우 ‘성욕조절’(37.6%), ‘성관계’(35.1%)를 궁금해 했다.



### 성 고민 의논상대(복수응답)

성 고민이 생겼을 때 의논하는 상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의논한 적 없다'는 대답이 남학생(48.6%), 여학생(41.1%)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성친구'와 의논한다는 대답이 여학생(38.8%), 남학생(33.4%) 높게 응답했다.







# 제2장

## 부모가 인식하는 성





## 제2장 부모가 인식하는 성

### 1. 성의식 자가진단(학부모용)

다음은 성문제에 대한 '나의 내면 점검표'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되는 점수에 체크해 보세요.

문 항	점 수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성적인 표현에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3. 나는 현재 성적인 문제로 갈등하지 않는다.	1	2	3	4	5
4. 나는 성적인 다양성을 인정한다.	1	2	3	4	5
5. 나는 성문제가 있는 자녀를 한 인격체로 진솔하게 대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성문제를 아이와 나누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	1	2	3	4	5
7. 나는 성에 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새로운 정보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다 하셨으면 점수를 합산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25점 이상인 당신은 전문가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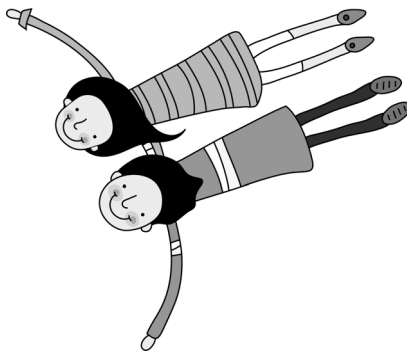
내 아이의 성건강뿐 아니라 주위에서 성과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네요.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주세요.

15~24점 사이라면 당신은 노력형이네요.

자신의 고민이 해결되지 못하면 아이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처럼 노력하는 자세로 성문제에 접근해 주세요.

14점 이하 : 당신은 좀 더 '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좀 더 '성'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심과 비례하여 자녀의 성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성 talk

‘아직 어린데 성교육을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과연 어디까지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얘기를 꺼내서 앞으로 얘기를 더 안하지 않을까?’, ‘딸아이한테 아빠가(혹은 반대로)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 ‘괜히 얘기해서 생각도 없는 아이가 더 생각하게 되진 않을까?’

앞의 통계 자료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미 고등학생이라면 남학생의 대부분 그리고 여학생의 3/4는 음란물에 접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전 부모님들이 책이나 비디오로 접하던 음란물보다 훨씬 더 변태적이고 정상적인 성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아이가 왜곡된 성을 갖게 되는 것보다 올바른 성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님이 해주셔야 하는 몫입니다.

자녀와 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누구나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학업이나 진로,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 되지만 유독 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보다 먼저 혹시 평소에 자녀와 의사소통은 잘 되시는지요? 만약 잘 안되고 있다면 성talk 이전에 자녀와의 대화부터 잘 되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성talk’가 아니라 ‘성교육’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는 대화도 거의 없다가 일부러 시간을 잡고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한 번 ‘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한다면 서로 더 불편하기만 하겠지요? 그래서 ‘성talk’ 이전에 자녀와의 대화가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집은 다른 얘기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자녀가 성과 관련하여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혹시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성’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진 않으셨는지요. 흔히들 어렸을 때 남자 아이가 자신의 성기를 만질 때 ‘만지면 못 써’ 혹은 ‘자꾸 만지면 고추 떨어져’하고 못 만지게 하진 않으셨는지요? 그런 태도를 보이셨다면 아이는 자라면서 성과 대해서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자연스러운 성talk를 위해서는 부모님부터 성과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간에도 성과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성과 대한 것을 금기시 하신다면 자녀와의 성talk는 정말 어렵겠지요. 성은 은밀한 것이 아닌 우리가 먹고, 자고, 타인과 대화하고, TV를 보며 웃고 울고 하는 것과 같은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진심으로) 느끼신다면 자녀와의 성talk는 한결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성과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부러 시간을 내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화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뉴스를 같이 보다 ‘미혼모, 10대 임신’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혹시 학교에는(아는 친구 중에는) 임신한 아이는 있니?”로 시작을 해서 10대 임신, 낙태 등에 대해서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엄마가 참 쑥스럽네”, “아빠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라서 참 당황스럽구나”와 같이 느껴지는 바를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은 대화에 도움이 되며, 자녀도 그와 같은 대화의 패턴을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성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경우 끝내 ‘성인 이전에 성관계는 안 된다’, ‘임신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등의 부모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역시나 엄마, 아빠랑 얘기해 봤자 안된다는 이야기 뿐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대화는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녀가 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청소년기에는 반드시 ‘성(性)’과 관련된 내용도 대화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녀 스스로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성에 대한 결정권도 바로 자녀가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성적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권리로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본인의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몸을 만질 것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성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나 배려보다는 ‘나의 느낌’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청소년성교육의 주된 이념은 ‘순결’이었지만 2001년부터 청소년성교육에서 제외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성교육은 사회문제가 불거질 때 강당에 모아 놓고 성폭력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인데, 성적자기결정권을 통해 성교육을 받으면 자신의 성적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처 : 경기여성정보웹진 ‘우리’



# 제3장

## 청소년 성관련 Q&A





## 제3장 청소년 성관련 Q&A

### 1. 이성교제

**Q1** 이제 중학생이 된 딸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같은 반의 남자 아이가 우리 딸 아이에게 사귀자고 고백해 왔다고 하고 딸 아이도 싫지는 않다고 합니다. 요새 워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이제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요?

**A** 이성교제에서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불안함이 무엇인지 이해가 갑니다. 굳이 딸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이성교제를 한다면 ‘혹시나 이성교제에 빠져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성 관계를 갖게 되어 아이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등의 걱정이 되는 건 부모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대인관계가 폭 넓어지면서 외모에도 관심을 갖고 이성교제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가치관으로 인해 ‘이래라 저래라’하게 되고, 그것이 아이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께 얘기를 하지 않게 되어 대화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은 조금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게 되고 그것이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뽀뽀는 하면 안 된다”, “둘이만 노래방 가면 안 된다” 등의 하지 말라는 것들만 나열하게 된다면 아이는 그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이제는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훈계 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아이와 어떤 일이 있었니?”, “무슨 좋은 일 있었니?” 등의 질문을 통해 아이의 이성관계에 대해 점검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우리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니 기쁘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하는구나...”하면서 얘기를 꺼내시면 이야기를 부드럽게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혹시라도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생겨서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엄마는 언제든지 우리 딸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남자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마에게 얘기해 주렴”

걱정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부터 잔소리로 일관하시는 것보다 건강한 이성교제에 초점을 두시고, 성적자기결정권 또한 자녀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성 관련 문제 의논 상대’에 대부분이 ‘친구’ 혹은 ‘의논한 적 없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아이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아이가 문제일까요? 고민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야기 할 만한 어른이 옆에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성관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부모와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시는 것은 부모님의 대화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 2. 피임

**Q1** 올바른 피임 방법에 대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깨어있는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갖는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지!’하고 자녀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답고 생명이 있는 성을 알려주기에 우리 어른들이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피임법을 교육한다고 하면 나이 많은 어른들은 우려의 눈빛을 보냅니다. 피임법의 결과로 마음 놓고 즐기면 어떻게 하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어른들은 피임에 대한 무지로 낙태와 미혼모 발생 등 더 큰 위험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올바른 피임교육을 통해 부모님은 자녀에게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게 할 수 있고, 단지 즐기기 위한 성이 아닌 이후 따르는 결과 및 책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피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는 피임의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 너무 중점을 두기보다 성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 피임에 대한 생각 등 성 가치관에 중점을 두신다면 부모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등학생인 자녀의 성교육을 시키려면 좀 더 구체적인 성교육 방법과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기의 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성인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



다. 남학생인 경우 특히 피임에 대한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여학생에게 임신이나 피임 등의 성교육을 가르치고 남학생에게는 성교육을 시키지 않는데, 임신과 피임은 남녀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사용하는 피임방법은 콘돔에 의한 것입니다.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찢어지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돔이 벗겨지지 않게 하려면 음경이 충분히 발기된 이후에 끼워야 합니다.

또한 먹는 피임약인 경구피임약은 복용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고, 생리시작(초경 이후)부터 폐경까지의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복용이 가능합니다. 경구피임약은 배란억제제인 호르몬제로서 피임목적외에도 생리주기를 안정시킬 목적으로도 쓰고 생리를 지연시킬 목적, 생리통완화 등으로도 쓰입니다. 약국에서도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지만, 종류가 다양하고, 조금씩 부가적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피임약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피임약은 성관계후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자 복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빨리 복용할수록 피임효과가 높습니다. (24시간 내 95%, 48시간 내 85%, 72시간 내 65% 피임효과)



### 3. 임신

**Q1**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상담을 통해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녀의 예기치않은 임신으로 인해 많은 걱정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에 우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10대의 임신의 경우,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에 대한 책임측면을 청소년의 경우는 간과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이번 경험을 통해 현실을 담담히 인정하고 다시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임신에 대해서 많은 경우 임신중절이라는 선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신중절(낙태)은 불법이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이 된 경우, 임신을 시킨자가 가족 즉 근친상간일 경우, 마지막으로 임신중인 태아가 기형이거나 산모의 몸이 임신을 유지할수 없는 상태일때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절이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녀가 미혼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피임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산부인과를 직



집 찾아가 상담하거나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등 청소년 상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임신중절이후에는 신체적인 후유증뿐만 아니라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후유증 또한 매우 큼을 인식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낙태 후 자녀의 심리적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부모님께서 유의하시고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신중절 후 자녀는 산부인과에 오고가며 느꼈던 불편함과 ‘아이를 죽였다’ 또한 ‘부모가 나를 어떻게 여길까?’라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로 인해 상대방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경우 배신감과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 상실과 자기 비하감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갈 데까지 다 갔다’ 라는 생각에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술집이나 향락업소를 찾아가 자신을 확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께서서는 물론 속상하고, 힘든 마음이 크시겠지만, 자녀를 비난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질책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시는 것을 경계하시고, 자녀가 이후의 삶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일이 결코 잘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삶을 포기할 정도의 일이 아니고,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을 인식시켜 주셔서 담담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하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가까운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같이 신체적, 심리적 영향이 있으나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왜곡과 자신에 대한 비하감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기 에 가족들의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4. 자위



중학교 1학년 아들의 방문을 우연히 열어보다가 아이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얼른 돌아섰는데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마냥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아이가 생각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아마 아이도 엄마에게 들켜서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자위행위하는 것을 알고는 ‘아,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구나’라고 흐뭇해하기보다는 ‘이 일을 어쩌나, 앞으로 어떻게 대하나’ 고민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여주느냐가 자녀에게 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위행위뿐 아니라 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므로 공부할 시기에 쓸데없는 곳에 관심이 있다며 나무라거나, 성에 대한 호기심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가치관을 전달한다면 자녀는 성에 대한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고 왜곡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 자신이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이성교제 등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러운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녀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위행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조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위행위 경험을 조사하였더니 남학생은 70~80%, 여학생은 23%로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3배정도 많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성적욕구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 것이 청소년의 발달과제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위행위자체보다는 자위행위 후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이는 실제로 자위행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긴장해소나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자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불안, 심리적 긴장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으므로 자위의 원인을 파악하여 습관화되지 않도록 지도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아들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여 민망한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자연스럽게 자녀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위행위는 개인적인 행동이므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게 방문을 잠그도록 얘기합니다. 성교육은 어머니 혼자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참여하도록 해서 자녀와 자연스럽게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 5. 음란물

**Q1** 안녕하세요? 저는 중1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음란물에 중독되지 않을까요?

**A** 아들이 음란물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니 실망도 크고 이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참 기가 막히실 겁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음란물에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이 볼 때는 잘못된 성에 대한 생각들이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이런 음란물에 접하는 연령이 낮아져서 보통 초등학교 4학년이면 관심을 갖게 되어 초등학생의 20.4%가 이미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물에 접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 시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5백 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1%의 학생들이 음란물을 보고 난 후에 계속 보고 싶어진다고 응답했고, 60.3%의 학생들이 음란물의 묘사에 따라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했으며, 실제로 10명 중 1명이 모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이러한 음란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집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단은 치르지 말고 간접적으로 아들에게 요즘 “너희들이 음란물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의 성과는 달리 사람의 성적인 자극을 위해서 만들어서 인간적인 사랑이나





배려는 없이 단지 성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가르치신다면 아이들이 음란물을 접해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음란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컴퓨터 음란물 퇴치 프로그램은 대략 4~5가지 입니다. 한국전산원에서 개발한 ‘수호천사’나 ‘NOX’,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가 개발한 ‘S-Checker’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부모님도 할 수 있도록 쉽게 제작되어 단지 프로그램 CD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음란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처는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 (02)392-0330, 서울 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02)530-4937, 정보통신윤리위원회 080-023-0113 등 입니다.

**Q2** 아이의 책상에서 야한 그림이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요?

**A** 이전과는 달리 성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이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한참 성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성충동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기 아이들이 강한 성충동을 느끼고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인 자극, 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이 모든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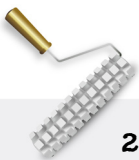
니다. 그런 정보는 왜곡되고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올바른 성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자신이 접한 것이 진실인 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님께서 다양한 성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기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도 알고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야한 그림이나 사진, 성과 관련된 잡지, 비디오를 보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한 그림이나 음란물을 발견했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아이를 경멸하는 태도보다는 그럴 수 있고, 그러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로 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란물이나 야한 그림 등을 자꾸 보는 것이 왜 안 좋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음란물은 현실과 다른, 왜곡된 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그러한 것을 볼수록 성적인 충동이 올라 조절하기 힘들어진다는 것 등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위행위나 성관계, 임신 등과 관련된 정보도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한 것에 대하여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위행위는 나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결혼을 하기 전까지 성충동, 성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가 성에 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것입니다.



**Q3** 딸아이가 중학생인데, 얼마 전에 음란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스러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전화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어린 딸아이가 그런 괴상한 전화를 받았다니,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음란전화를 하는 동안 자위행위를 하면서 성적인 극치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흥미가 없어져서 금방 끊어 버립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서 욕을 한다던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할수록 이들은 더욱 더 성적 흥분을 느껴 자위행위를 하게 되며, 계속 전화통에 매달리게 됩니다.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모욕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 역시 성폭력의 일종입니다. 이 역시 성폭력특별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려면 전화국의 155번 서비스나 전화국을 통한 발신인 전화번호 역추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국을 통한 발신인 전화번호 역추적 장치를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에 이러한 사정으로 상담을 하였다든 상담 확인서와 경찰서에 음란전화를 거는 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든 고소장 접수 증명원을 전화국에 가지고 가면 전화국에서는 앞으로 음란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 발신인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즉각 전화의 발신인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 6. 동성애

**Q1** 아이가 아는 형을 좋아하는데, 스킨십도 하고 하는 모습이 지나쳐보이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특정 행동에 얽려 및 걱정이 드셨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녀의 어떤 행동들로 자녀를 동성애자라고 단정 짓기에는 불확실하고, 자녀가 동성애를 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어른들의 눈으로만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행동을 선불리 결론지어 아이들을 나무라는 일은 매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부른 잘못된 어른들의 걱정어린 시각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모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거나 반항심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직 성정체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자녀가 동성애라기보다는 청소년기에 흔히 가지게 되는 일시적인 동성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기타 어떠한 상상도 아직 자녀의 솔직한 표현과 증거가 없는 한, 어디까지나 지나친 상상일 수 있고 지나친 기우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 외로움과 허전함, 호기심, 그리고 가장 크게는 발달 시기적으로 왕성한 성호르몬의 분비가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충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동성애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남녀공학이 적은 상태에서 부담 없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성 보다는 동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쉽게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일시적인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어른들이나 부모로서 아이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당황하거나 실망하는 일, 혹은 아이들의 품행을 이러한 일로 낙인찍는 등의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보다는 부모나 성인으로서 아이들의 문제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로 여겨 아이들을 얼마나 건전하게 유도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해결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체감으로 아이 또한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자녀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보다는 아이가 자신의 성적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정체성을 결정해나가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자녀가 더욱더 폭넓은 사고로 판단하고, 결정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장을 부모가 마련해주기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라면, 청소년상담기관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녀가 충분히 경험해야 부모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라도, 혼자서만 처리하려 하지 않고 어른들에게 의논을 하거나, 자신의 성적인 긴장을 아무도 없는데서 음성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포기할 수 있게 되겠지요.

아이에게 성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일이 걱정부터 앞서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 손에 잡히는 성(性)

것은 기성세대의 성교육이 성은 부정적이고 창피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든 부정적인 것 일수도 있고 또한 긍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자녀에게 성을 올바르게 건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7. 이상성행동

**Q1** 중학생 아들이 아이 방에서 여자 속옷으로 자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부턴가 제 속옷이 다 없어지고, 하루는 아들 아이 방에서 정액이 묻어 있는 제 속옷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A** 안녕하세요? 우선 자녀가 자위행위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것도 놀라실 일인데 이런 이상성행동을 발견하시고(여자속옷에 자위), 참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위행위 그 자체는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져서 2차 성징이 초등학교때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여자 아이들의 경우 초경을 하고, 가슴이 커지며, 음모가 나고, 남자 아이들의 경우도 밤에 잘때 몽정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성숙도가 빨라짐에 따라 자위행위도 중학교 때부터는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놀라신 것은 자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머니의 속옷, 여자 속옷으로 자위행위를 한다는 사실이겠지요. 아직은 그 행동의 심각성이나 정도, 빈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행동이 비정상적인 성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반응, 흥분 상태가 사람과 사람 간의 애정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대상이나 상황에 의해 성적으로 흥분될 때 성장애, 성도착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흔히 여자들의 속옷, 스타킹, 신발을 통해 성적으로 흥분하고 쾌감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함으로써 성적 흥분이나 쾌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인 여성 물건에는 무생물체에 의해서 성적으로 흥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이 입는 속옷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성적으로 흥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매체라 여성의 옷가지들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경험하기 보다 여성의 물건, 머리카락이나 속옷, 부츠, 스타킹 등에 과도한 애착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어른들이나 부모로서 아이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당황하거나 실망하는 일, 혹은 아이들의 품행을 이러한 일로 낙인찍는 등의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보다는 부모나 성인으로서 아이들의 문제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로 여겨 아이들을 얼마나 건전하게 유도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해결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성 물건에는 일반적으로 아동기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특히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에 이 물건들을 가지고 성적인 상상을 합니다. 대부분 남자에게서 이 장애가 나타나며, 여성물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문제 행동 때문에 죄의식과 수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과 불안, 두려움, 고독감등을 호소하고 문제가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물건들을 모으기 위해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여 경찰에 검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의상 도착증이 있는데, 이는 남자가 성적인 흥분과 쾌감을 경험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여성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주로 남성들에게서만 나타납니다. 의상도착증은 이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이성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사회적 관계도 비교적 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하나의 증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상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증상으로 부터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 성도착증세에 대해 어머니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아드님이 성도착증세일 것이라는 진단을 내려서가 아니라 증세가 악화될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어머니가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의 행동을 관찰하시면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여성의 속옷에 관심을 갖고 성적 흥분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행동 상에 여성의 물건, 예를 들면 팬티 등의 속옷이나 스타킹, 부츠 등에 과도한 애착을 갖고 있는지 살펴서서(아래의 진단기준 참고) 이상한 행동이 습관적으로 계속 관찰될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성도착증(Paraphilias)

#### 302.4 노출증 (Exhibitionism)

##### ▣ 진단기준

- A. 생각치도 않는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 B. 이러한 성적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위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 302.81 물품음란증(Fetishism)

#### ■ 진단기준

- A. 무생물적인 물건(즉 여성 내의)을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위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 C. 기호물이 옷 바뀔 입기에 사용되는 여성 의류(복장도착증) 또는 촉감으로 성기를 자극하려는 기구(예: 진동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302.89 마찰 도착증(Frotteurism)

#### ■ 진단기준

- A.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접촉, 문지름을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 302.2 소아 기호증(Pedophilia)

#### ■ 진단기준

- A. 사춘기 이전의 소아나 소아들(보통 13세 이하)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 C. 나이가 적어도 16세 이상이며 진단기준 A에 언급된 소아 또는 소아들보다 적어도 5세 연상이어야 한다.



주의 : 12세 또는 13세 소아와 성관계를 맺고 있는 후기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세분할 것** : 성적으로 남아 선호, 성적으로 여아 선호, 성적으로 양성 모두 선호

**세분할 것** : 근친에 국한되는 유형

**유형을 세분할 것** : 폐쇄적 유형(소아에게만 매력을 느끼는 경우), 비폐쇄적 유형

### 302.83 성적 피학증 (Sexual Masochism)

#### ▣ 진단기준

- A. 굴욕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묶이고 기타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행위(실제적인, 가상적인 것이 아닌)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 302.84 성적 가학증 (Sexual Sadism)

#### ▣ 진단기준

- A. 희생자의 심리적 또는 육체적 고통(굴욕을 포함)을 통하여 성적 흥분을 얻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 302.3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 (Transvestic Fetishism)

#### ▣ 진단기준

- A. 옷 바꿔 입기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세분할 것** : 성 불쾌감이 있는 것; 개인이 자신의 성 역할이나 성 정체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느낄 때

### 302.82 관음증(Voyeurism)

#### ▣ 진단기준

A. 옷을 벗는 과정에 있거나 성행위 중에 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옷을 벗은 대상을 관찰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된다.

B.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 30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변태성욕 (Paraphilia Not Otherwise Specified)

#### ▣ 진단기준

이 범주는 어떤 특정한 장애의 진단 기준에도 맞지 않는 변태성욕을 부호화하기 위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예는 외설 음란 전화, 시체기호증, 신체의 일부만을 기호하는 행위, 수간, 분노 기호증, 관장 기호증, 그리고 방뇨 기호증이 있다.



## 8. 성매매

**Q1**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교 2학년의 여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얼마 전 전화 한통화로 우리 딸아이가 요즘 유행하는 원조교제를 하면서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것도 그냥 어울린 것이 아니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못된 짓을 하면서 어울려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 아이를 다시 정상적인 아이로 만들 수는 없나요?

**A** 이 글을 보내주신 어머니의 참담한 심정이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자녀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후 딸아이에게 가졌던 기대감과 상실감으로 무너져 내린 마음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글을 통해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어머니 또한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안쓰러움이 가장 크리라 봅니다. 거기다가 자식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끼는 어머니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하지만 딸아이 스스로도 지금 몹시 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듯이 대하기만 하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가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선 어머니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딸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파스한 부모님의 보살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져있을 딸에게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은 상처받은 마음에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방적으로 죄를 묻고 나무



라기보다는 우선 감사 안고 다독겨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 딸아이가 그런 원조교제를 통하여 여러 남자와 사귀고 관계를 맺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 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용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던가, 아니면 친구의 유혹에 넘어 갔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설명과 이유가 있으리라 여겨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통해서 딸아이를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해서 아이의 말을 막지 않도록 하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부모는 '내 자식은 설마'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 학생이나 비행청소년은 처음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식도 언제든지'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런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대화 그리고 부모님의 애정이 필요합니다. 아직 청소년기는 미성숙의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어머니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는 건강한 아이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이 역할은 우선 부모의 몫이라 여겨집니다. 먼저 따뜻한 애정 어린 말과 행동으



로 따님을 안심시키고 그것이 어떤 것을 깨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부서지고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품어준다면 그동안 비뚤어 나갔던 행동에 작은 변화가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매일 혹은 일주일에 1-2번이라도 딸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와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선 힘써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딸아이의 모습이 환하게 밝아지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Q2** 딸아이가 중3여학생이에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가정형편상 집에서 용돈을 많이 주지 못해서인지 어느 날 핸드폰을 보니 인터넷을 통해 성인 남자를 만났더군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최근까지 연락을 해오고 있어서 딸아이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딸아이가 사고 싶은 물건과 용돈을 벌기위해 성매매를 아이가 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을 때 무척이나 당황하기도 하고, 무척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부모로서 자책감도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이 더욱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딸아이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자책하는 마음을 우선 잠시 내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아이와 진실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의 신체적인 어려움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청소년의 몸이기에 이번 일을 통



해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진료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갖고 싶은 물건이나 용돈을 벌기위해 했던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교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별생각 없이 또는 주위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의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봐 주시고 아이가 성매매를 결정하게 된 상황을 파악하여 아이가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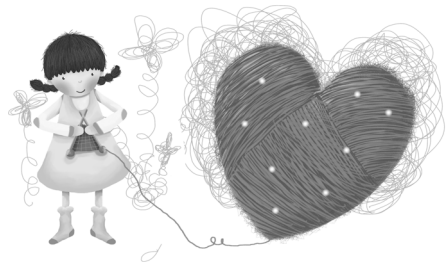
그리고 지금과 같이 성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해 오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이유에서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 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아이에게 성매매를 요구할 경우 문자 또는 음성 등을 저장 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 했을 때에는 성매매요구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보건복지부([www.mw.go.kr](http://www.mw.g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성매매 실시간 신고 프로그램인 유스키퍼(Youth keeper)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과 아이가 좀 더 신뢰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전문 상담기관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어 더욱 대화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많이 당황하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면 가족의 관계 증진 및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록





## 1. 성관련 추천 영화

	제목	연도	주제
<b>아이와 함께 보세요.</b>			
1	나의 장밋빛 인생(전체가)	1997	성정체성
2	물란(전체가)	1998	성정체성
3	소년은 울지 않는다 (만 15세 이상)	1999	성정체성
4	헤드윅(만 15세 이상)	2001	성정체성
5	주노(만 12세 이상)	2007	10대 미혼모 임신
6	몽정기(만 15세 이상)	2002	청소년기의 성발달
7	체인지(만 12세 이상)	1997	청소년기의 성발달
8	위험한 사춘기	2010	국내최초 청소년 성교육 영화
<b>부모님만 보세요.</b>			
9	룩키 호러 픽처 쇼 (청소년관람불가)	1975	성정체성
10	이브의 아름다운 키스 (청소년관람불가)	2001	성정체성
11	걸스온탑(청소년관람불가)	2001	청소년기의 성발달
12	말레나(청소년관람불가)	2000	청소년기의 성발달
13	아메리칸 파이 (청소년관람불가)	1999	청소년기의 성발달
14	이투마마(청소년관람불가)	2001	청소년기의 성발달

출처 : <영화와 정신의학 연구회> 의



## 2. 성폭력

### 성폭력의 유형

#### 1) 성폭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 (1) 강간

남성이 여성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이다. 성교라는 것은 가해자의 성기가 꼭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구장성교나 항문성교도 포함하며 삽입시간, 사정 여부 등에 상관없이 일단 삽입이 일어났으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2) 강간미수

남성이 여성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교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이다.

가해자가 꼭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옷을 스스스로 벗었다든지,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든지, 피해장을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의 행동들이 있었다면 강간미수로 볼 수 있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명명하는 대로 따른다.

##### (3) 심한 추행

남성이 여성에게 비록 성교를 시도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키스, 애무 등을 하는 경우이다.

##### (4) 가벼운 추행

남성이 고의로 여성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



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가해자의 지속적인 쾌감을 위해 신체의 특성부분을 계속 만지거나 했다면 심한 추행이 된다.

(5) 성기노출

여러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일부러 노출시킨 채 서있거나 돌아다니는 남자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성기를 노출시킨 채 접촉을 하는 경우는 심한 추행에 해당된다.

(6) 음란전화

익명의 남성으로부터 성적 자극을 유발하거나 외설스런 말을 담고 걸려오는 전화를 말한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소리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음란전화이다.

2) 성폭력의 유형에 따른 분류

(1) 어린이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 가하는 성폭력으로 아동 성 학대를 말한다.

어린이 성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말로 희롱하기, 어린이의 옷을 벗기기, 어린이 앞에서 옷을 벗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성폭력이다.
- 어린이의 몸 만지기, 가해자의 몸을 만지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성기 이외에 성기 접촉을 하는 성폭력이다.
-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기,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것을 포



- 함하는 성기 뿐 아니라 몸에 성적 접촉을 하는 성폭력이다.
- 가해자의 성기를 어린이 허벅지 사이에 끼우게 하는 것이다.
  - 어린이의 입에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다.
  - 어린이의 질, 항문에 가해자의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이다.
  - 어린이에게 약물이나 술을 먹이고, 때리면서 동시에 위의 여러 성폭력도 함께 하는 것이다.

### (2)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제적인 성적 행동을 의미한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관계에 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어린 피해자는 가해자가 성폭력을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 (3)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은 14세 이상의 남녀쌍방이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정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이다.

주로 10~20대에 집중되어 일어나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나 가해자의 유인이 크게 작용한다. 피해당사자조차 강간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 처벌에 있어서 강제성 입증의 어려움이 많다.



#### (4)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또는 거래처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신체적/언어적/시각적 등)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5)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적대적·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로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한다.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 성희롱을 들 수 있다.
- 전화나 전자메일을 통해 집요하게 성적 희롱을 하거나 대화방이나 토론방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인 사이버 스토킹이다.
- 사이버 명예훼손이다.
- 음란한 사진, 음란한 만화를 포함하는 사이업 음란물 게시 등이 있다.



## ☞ 성폭력 법적 대처 방법

### 1) 증거수집 등

성폭력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정액채취, 체모, 반항할 때 생긴 상처나 멍든 부위, 찢어진 옷가지 등에 대한 사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때는 성폭력범죄 당시의 사정 등을 잘 유도한 가해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한 뒤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 차트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와 증거확보 차원에서라도 소아정신과를 꼭 거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2)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강간 이 아니라 화간이나 상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시 전문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경위서 작성

성폭력범죄를 고소한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등이 있게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



신이 경험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성폭력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해 둔 뒤 이를 토대로 고소장도 작성하고 경찰, 검찰, 법원의 소환 때마다 한번씩 읽어보고 가면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은 면할 수 있습니다.

#### 4) 가해자들의 협박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형사 고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보복을 고지하거나 고소를 취소할 것을 협박하곤 하지만, 실제로 협박처럼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협박죄 등으로 또 다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5) 합의와 공탁, 손해배상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원할 경우, 합의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도 합의금액이나 합의시기 등에 관하여 가능하면 전문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가 공탁을 하였다면 적절한 시기에 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3천만원 혹은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손해배상은 합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6) 가해자 처벌

### (1) 성폭력 처벌 유형

성폭력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처벌 유형을 정해놓은 성폭력만이 처벌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되는 성폭력의 유형에는 추행, 간음, 강간이 있습니다.**

먼저, 추행이 있는데, 이는 성욕의 자극,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를 말하며,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 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2조, 305조) 및 성폭력 특별법 제11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음은 법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간음은 강간과는 달리 행위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한 경우, 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305조) 및 업무상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간음 및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간음(형법 제303조)하는 경우는 처벌된다고 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녀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됩니다.

(2) 법적대응방법 및 절차

위와 같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으며, 어떠한 방법을 선택 하든지 그것은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먼저, 민사적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판결은 형사 판결과는 달리 가해자에게 형(징역형,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앞서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적인 해결방법에는 고소, 고발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모든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이 있음)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기 이전에 고소 이후 겪게 될 과정에 대해서 피해자와 함께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소 이후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이 해결될 지를 바라는 지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위해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특징(성기의 특징이나 신장, 외모, 신체상 특이부분, 행동상의 특징 등)을 기억해 기록해 놓는다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정액채취나 처녀막 파열 정도 등에 대해서 신속히 진찰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처나 멍든 부위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하도록 하며, 피해당시 입었던 옷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피해 장소를 보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이 큰 부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둔 자료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피해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기회가 되며, 고소해서 범인을 잡게 되면 가해자가 또다시 범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없앨 수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를 뒷받침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 처벌을 통해 가해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피해 후 찾아오는 무력감, 도피하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피해자 자신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할 경우 경찰서나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으며, 수사나 재판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하여 따님과 충분히 논의한 뒤 고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나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절차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있게 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친권자의 부모, 후견인 등)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반드시 법정대리인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



에 고소를 해야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수사시관에 구두로 진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한국성폭력 상담소 : 02)529-4271(2)

### (3) 근친상간 처벌

본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관하여 친족내의 사건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의 제한이 있어 그 처벌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특례를 두어 고소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 3. 성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며 성폭력에 관련한 법률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09.16 시행예정) (일부개정 2011.9.15 법률 제11048호)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09.16 시행예정) (일부개정 2011.9.15 법률 제11048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7호)등이 있으며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시 처벌은 무엇인가요?

1) 강간시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폭행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13세 미만 여자에 대하여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강제추행시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을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속합니다.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자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또한 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1)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2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3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3조)

■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인가요?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

- 장애인과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또 이들을 성폭행했을 경우 장애인 7



년 이상, 13 살 미만의 아동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영화 도가니와 같이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고, 또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만 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형량을 올렸습니다.

(일명 도가니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2011. 10. 28)

■ 신고 이후 2차 피해가 두려운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진술녹화제도와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 있는 자와 함께 하도록 수사 재판과정 및 재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학교 등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 우편물 이용하여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호처분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2-4)

■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행의 처벌정도가 궁금합니다.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





■ 전화나 메일로 계속해서 음란메세지를 보내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

■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찍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 카메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성범죄 처벌규정은 어떠한가요?

-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친족관계인 사람이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 성폭력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친권상실이 가능한가요?

-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면 안 될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

■ 성폭력 범죄자의 인터넷 신상공개의 대상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이며 인터넷 공개명령대상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자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공개대상자에 대해 등록기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며 등록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 면, 동)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제38조)

■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지역에서 우편으로 고지받을 수 있나요?

- 여성가족부에서 위임한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고지정보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3)

■ 성폭력 범죄자가 부착하는 전자팔찌에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검사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나 16세 미만의 사



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살인 범죄자 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착기간 :**

-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 10년 이상 30년 이하
-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 3년 이상 20년 이하
-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부착기간의 2배로 선고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9조)

-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범행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처음 저지른 범행이더라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명 도가니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1항)

■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취업이 제한되나요?**

- 아동 청소년 대상 및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형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래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대상기관 : 유치원, 학교, 학원, 개인과외교습, 청소년시설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 성매매 금지조항은 어떠한가요?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 2010.4.15.>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9,10조)

■ 성매매 가해청소년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1.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및 다목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 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와 제7조의 죄(강간·강제추행 등)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 2. 또한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제28조제1항① 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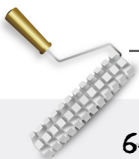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을 준용합니다.〈개정 2011.9.15.〉
3.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신설 2011.9.15〉 〈시행일 2012.9.16.〉
5. 검사는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합니다.〈신설 2011.9.15〉 〈시행일 2012.9.16〉
6. 위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신설 2011.9.15〉 〈시행일 2012.9.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9조)



#### 4. 성관련 연계기관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서울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 576-7128
	내일 청소년상담소	02) 338-8043
	한국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2) 2263-6465
	한국 여성 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	02) 739-8858
	내일 신문 부설 성상담소	02) 338-7480
경기	용인 성폭력상담소	031) 282-4668
	인천 가정 성폭력 통합상담소	032) 865-1365
	인천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32) 529-2546
	강화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32) 934-1901
	대한 가족 협회 부설 인천 성폭력 상담소	032) 424-4592
	수원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31) 232-7780
충남	성남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31) 751-2050
	대전YWCA 성폭력 상담소	042) 254-3038
	대한 가족 협회 부설 대전 성폭력 상담소	042) 526-4000
충북	여성의 소리 부설 충남 성폭력 상담소	041) 572-2000
	천안여성의 전화	041) 561-0306
	대한 가족 협회 부설 청주 성폭력 상담소	043) 274-7476
대구	청주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43) 252-0966
	인구 보건복지협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53) 566-1900
	대한 가족 협회 부설 대구 성폭력 상담소	053) 566-1901
광주	대구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53) 475-8084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062) 521-1360
	대한 가족 협회 부설 광주 성폭력 상담소	062) 671-4050
강원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62) 363-7739
	속초 성폭력상담소	033) 637-1988
	춘천 성폭력 상담소	033) 257-4689
	원주 성폭력 상담소	033) 731-4338
	강릉 성폭력 상담소	033) 652-9556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전북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061) 666-4001
	진주 성폭력 예방 치료 센터 부설 성폭력 상담소	063) 283-9847
경남	성가족 상담소	055) 244-8400
	경남 여성회 부설 성가족 상담소	055) 283-9647
	창원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55) 266-3722
	울산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55) 244-1555
	진주 여성 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	055) 743-0410
부산	부산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051) 817-6464/6474
	부산 성폭력 상담소	051) 514-3330
	부산 성폭력 피해 상담소	051) 628-0830
	대한 가족 협회 부설 부산 성폭력 상담소	051) 624-5584
제주	제주 여성 민우회 부설 여성 상담소	064) 749-0261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상담소	064) 756-4008
	제주 YMCA 여성의 피난처	064) 755-3040

[온라인 상담기관 안내]

1. 탁틴내일 : [www.tacteen.net](http://www.tacteen.net)
2. 한국성폭력상담소 :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
3. 성포탈 아우성상담실 : [www.aosung.com](http://www.aosung.com)
4.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이버상담실 : [www.yline.re.kr](http://www.yline.re.kr)
5.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www.ahacenter.kr](http://www.ahacenter.kr)

